

분류번호	A - 11	공급망 ESG 관리 규정	제정일자	2025. 12. 01
관리부서	구매팀		개정일자	-

공급망 ESG 관리 규정

시행일 : 2025 년 12 월 01 일

(주)동성화인텍

분류번호	A - 11	공급망 ESG 관리 규정	제정일자	2025. 12. 01
관리부서	구매팀		개정일자	-

목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정의).....

제 2 장 공급망 ESG 관리

제 4 조 (협력업체 행동규범).....

제 5 조 (협력업체 ESG 관리영역).....

제 6 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분류번호	A - 11	공급망 ESG 관리 규정	제정일자	2025. 12. 01
관리부서	구매팀		개정일자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성화인텍은 전 세계 조선소 및 에너지 기업에 LNG 운반선 및 저장설비용 단열시스템(보냉재)을 공급하는 글로벌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가 회사의 품질·안전·환경 책임 이행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본 규정은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원자재 조달, 안전한 제조 활동, 윤리적 거래,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성화인텍은 친환경 조선·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동성화인텍의 국내 사업장, 그리고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공급사 및 하위 협력업체(Sub-tier supplier)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에는 보냉재 원부자재 공급사, 화학물질 제조가공업체, 생산·물류 협력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규 협력사 등록, 거래 유지, 평가 및 계약시 본 규정과 협력업체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체결합니다.

규정의 목적은 단순한 준법을 넘어, LNG 산업의 안전·품질 기준(GTT, IGC Code 등)과 연계된 ESG 책임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제3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원자재, 제품, 부품, 용역 등을 제공하는 모든 외부 업체를 말한다. "금품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협력업체 행동규범"이라 함은 협력업체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영역에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동성화인텍이 제정한 윤리 및 운영 기준을 말한다.
- ③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라 함은 동성화인텍의 ESG 경영성과, 협력사 평가결과 및 개선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분류번호	A - 11	공급망 ESG 관리 규정	제정일자	2025. 12. 01
관리부서	구매팀		개정일자	-

제 2 장 공급망 ESG 관리

제4조 (협력업체 행동규범)

동성화인텍은 협력업체가 ESG 관리영역별 최선의 운영관행(Best Practice)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업체가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협력업체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협력업체의 이행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활동을 요청 및 지원합니다.

행동규범 미준수 시에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화인텍은 협력업체 ESG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2030년까지 전체 협력사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ESG 자가진단 및 평가 완료
- 주요 협력사 및 고위험 협력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정례화 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율을 관리
- ESG 평가 결과 우수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하위 업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

제5조 (협력업체 ESG 관리영역)

동성화인텍은 협력업체 행동규범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요구되는 ESG 관리영역과 세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 항목은 RBA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하며, 협력업체가 공급망 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노동: 인권존중, 강제노동 금지, 차별금지, 근로시간 준수, 생활임금 보장

안전보건: 위험요소 제거, 화학물질·가스 취급안전, 보호구 지급, 비상대응체계 구축

환경: 온실가스·폐기물·수자원 관리, 환경법규 준수, 친환경소재 및 공정 적용

분류번호	A - 11	공급망 ESG 관리 규정	제정일자	2025. 12. 01
관리부서	구매팀		개정일자	-

윤리: 부패방지, 공정경쟁, 정보보호,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있는 조달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ESG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내부 감사체계 운영, 지속적 개선 및 보고체계 구축

동성화인텍은 협력업체가 위의 영역별 ESG 관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합니다

제6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동성화인텍은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가 및 개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 ① 평가계획 수립: ESG 리스크 평가 대상 협력사 선정 및 평가 기준·주기 수립 (산업위험도, 거래규모 등 고려)
- ② 서면진단: 협력사 자가진단서,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평가 실시 및 잠재 리스크 식별
- ③ 현장실사: 고위험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평가 수행 (환경, 안전, 노동, 윤리 항목중심)
- ④ 결과 분석 및 개선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리스크 동급화, 개선요청서 발행, 필요 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부칙

제 1 조 (시행일)

- ① 본 지침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